

서울고등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2042236(본소), 2019나2042243(반소) 판결
[보험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2042236(본소), 2019나2042243(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합10602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김연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20. 6. 16.

판결 선고2020. 7. 14.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합106020(본소),
2018가합10603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1,235,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7,919,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235,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4행의 "3보"를 "제3보험"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8행의 "또한"을 "설령"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4쪽 19 내지 20행의 "(=1,186,866,865원 - 678,947,237원)"을

"(=1,186,866,865원 - 678,947,273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의 "원고가 채권자에게"를 "원고가 C의 채권자에게"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9쪽 11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서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모집행위를 한 C이 아니라, 수수료반환청구의 근거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원고와 맺은 당사자로서 원고의 대전 D지점 지점장으로 등록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기재된 피고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C을 고소한 무렵인 2017. 8.경 비로소 C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는 피고를 원고의 대전 D지점 지점장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C이 피고의 명의로 모집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사촌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모집행위를 하였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수료를 반환할 사람은 C이 아닌 피고이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3호증, 4호증, 46호증, 70호증, 을 36호증의 1 내지 3,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2014년경 법인보험대리점인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주요내용은 C이 장차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업법상 모집자격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제휴한 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에 관한 모집행위를 하고 원고의 설계사수수료지급규정에 따라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받되, 모집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해지1) 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는 등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② 피고는 C의 사촌으로 2015. 6. 25. C을 영업관리자로 정하여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주요내용은 앞서 본 C의 경우와 같다.

③ 피고와 C은 당초 원고의 광화문지점에 소속되었다가, 원고의 대전 D지점이 설치되면서 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④ E협회에 등록된 원고의 대전 D지점의 지점장은 당초 C이었다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⑤ 원고의 대전 D지점에서 모집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G이 보험계약자인 1건은 2016. 7.경 체결된 후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었고, F이 보험계약자인 2건은 2016. 9.경 체결된 후 민원제기로 해지되었으며, 주식회사 H이 보험계약자인 5건은 2017. 4.경 체결된 후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해지되었다.

⑥ C은 실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모집행위를 하였으나, 원고의 전산 등에 당시 원고의 D지점 지점장으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를 모집인으로 입력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와 C이 모두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대전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모집명의인인 피고와 모집행위자인 C 중 누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확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그 수수료 반환채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그 여부이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행위자인 C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의사해석 법리와 유사하게, 우선 원고와 C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모집명의인인 피고 또는 모집행위자인 C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C과 원고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C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경위, 원고의 대전 D지점에서 피고와 C의 지위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이 모집된 전후의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모집명의인인 피고와 모집행위자인 C 중 누구를 모집인으로 이해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판단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그 모집인을 명의자인 피고로 이해하여 확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5호증, 46호증, 70호증, 83호증의 1 내지 4, 85호증의 1 내지 3, 86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36호증의 1 내지 5, 8, 38호증의 1 내지 16, 4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그 모집인을 당시 원고의 대전 D지점 지점장으로 인식하고 있던 C 본인으로 이해하여 확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법인보험대리점이 지점을 설치하여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려면 N협회 또는 E협회에 지점설치신고를 하면서,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품 모두에 관한 모집자격을 가진 소속 보험설계사를 지점장으로 등록하거나, 만일 지점장으로 등록하는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상품 또는 손해보험상품 중 하나에 관하여만 모집자격을 있다면, 나머지 보험상품의 모집자격을 갖춘 1명 이상의 보험설계사를 유자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당초 E협회에 대전 D지점에 관한 지점설치신고를 하면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에 관하여 모집자격을 가진 C을 지점장으로 등록하였다.

③ 그 후 원고는 2015. 7. 7.경 E협회에 대전 D지점에 관하여 지점장을 손해보험상품과 제3보험상품에 관하여만 모집자격을 가진 피고로 변경하고, 위 2종류의 보험상품 외에 생명보험상품에 관하여도 모집자격을 가진 C을 지점장에서 유자격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는 2017. 9.경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전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C이 보험계약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같은 지점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O 명의로 고객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해당 보험계약을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사기죄, 보험업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당시 제출된 원고의 고소장에는 앞서 본 원고의 E협회에 대한 대전 D지점 지점장 변경신고내용과 달리 C이 원고의 대전 D지점 설치 당시부터 2017. 7.경까지 계속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C이 수수료를 편취한 보험계약에 이 사건 보험계약 중 2016. 9.경 F이 P 주식회사와 계약한 1건 및

2017. 4.경 주식회사 H이 Q 주식회사와 계약한 5건이 포함되어 있다.

⑤ C은 원고의 고소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원고의 광화문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전 D지점이 생기면서 그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대전으로 와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보증을 서 주었던 사람이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그 채권자가 원고에 대한 저의 수수료채권을 압류하였다. 또한 그 무렵 대전 D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를 편취한 후 잠적함에 따라 지점장으로서 그들의 수수료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제가 원고에게 해당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이름으로 보험모집행위를 계속하면 원고는 저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잠적한 보험설계사에게 편취당한 수수료를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잠적한 보험설계사에게 편취당한 수수료를 환수하기 위해 저에게 대전 D지점 지점장을 피고로 변경한 다음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저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얻어 피고가 대전 D지점 지점장으로 등록된 후에도 여전히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피고의 이름으로 보험모집행위를 하여 위와 같이 편취된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피고의 통장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는 위 수사과정에서 '사촌인 C의 부탁으로 원고의 대전 D지점 지점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저는 명의만 지점장이었을 뿐 실제로는 관리팀장으로서 직접 보험모집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서울에 거주하며 일주일에 2~3일 정도 대전 사무실로 가서 자동차보험계약 등 기존에 모집된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업무만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2016. 9.경 F이 P 주식회사와 계약한 1건 및 2017. 4.경 주식회사 H이 Q 주식회사와 계약한 5건은 모두 C이 제 명의로 모집한 것이다. 이러한 C의 모집행위에 따라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수수료는 모두 C에게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협회에 대전 D지점 지점장 변경신고를 할 당시 피고가 생명보험상품에 관한 모집자격이 없는 반면 C은 그 모집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모집명의인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모두 피고가 모집자격이 없는 생명보험상품에 해당한다.

⑧ 원고는 E협회에 대전 D지점의 지점장을 C에서 피고로 변경등록한 후에도 C에게 매월 지점장에게만 보내는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시상명세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C이 여전히 위

지점의 지점장임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명의인인 피고에게 책정한 수수료에는 피고가 대전 D지점의 지점장 지위에서 받는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⑨ 한편 피고가 원고의 대전 D지점 지점장으로 등록된 기간에 작성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위촉계약서 해지신청서,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수수료 환수 책임각서 등의 지점장 서명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등이 피고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수료 환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위 지점의 명의상 지점장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상 모집인이 되는 것을 승낙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재오

판사박성윤

판사이의영

1)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을 통한 청약 과정에서 약관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서 부분과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